



농산물 외상대금 청구에 관한 법률

농업인의 정년은 몇세일까? •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정년은 몇 세까지로 볼 수 있을까? 농업인 한모씨(64세, 여)는 교통사고를 입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보험회사와 2년여에 걸쳐 소송을 벌였다. 최종 판결이 비록 '강제조정(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 또는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으로 끝났지만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경력 등을 참작해 농업인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목 받았다.

⊗ 안면 믿고 농산물 외산 공급, 대금 2년 넘게 못받아...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는 100만 원 안팎의 농산물 대금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곧 갚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이 같은 거래 관행을 악용해 농산물을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농업인을 두 번 울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김모씨(64세, 여)는 상대방을 믿고 농산물(잡곡)을 내주었다가 법률구조를 통해 2년이 지나고서야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사기꾼에게 당해 병까지 얻어...

“사람을 믿은 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도 농민을 속여도 유분수지 이걸 너무 심하잖아요.”

충북 진천의 한 재래장터(5일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그만 잡곡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64세 · 여)는 2년여 전의 일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쳐 병까지 얻었다. 200여만 원이 넘는 잡곡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컸지만 농촌의 순박한 인심을 악용한 전문 사기꾼들에게 당했다는 씁쓸함에 가슴이 아팠다. 사건은 지난 2004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김씨 가게에 40대 여자와 5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왔다. 인근 음성군 맹동면에서 청국장 제조공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소개한 이들은 처음엔 5만원어치의 콩을 몇 차례 현금으로 사갔다.

여자가 씩씩하면서 말도 잘할 뿐더러 남자는 서울 삼성동에 식품회사 본사가 있다며 자랑해 이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의심치 않았다. 얼마 후 이



들은 자신들의 공장에 사용할 흰콩(백태)과 검은콩(약콩) 180만원어치를 구입해가면서 120만원은 현금으로, 60만원은 외상으로 남겨 뒀다.

이들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백태 6포대와 검은콩 6포대를 청국장 제조공장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몇 차례 현금거래가 있었던 데다, 당연히 배달 직후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김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화를 부를 줄은 몰랐다. 대금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끊고 공장을 찾아가면 무시무시한 도사견들이 막아섰다. 급기야 공장 여직원은 “대금을 지급했는데 왜 이제 와서 판소리냐”며 우겼고 김씨는 서울에 올라가 식품회사 본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들이 전

문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그 충격이 더욱 컸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나한테는 큰 돈이라는 말이 낯설었다”고 말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농협 무료 법률구조사업에 도움을 청했다. 인근 농협을 이용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얘기를 어렵듯이 들은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진천 경찰서와 청주지방검찰청을,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차례로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했다.

⊗ 공단 도움으로 전액 지급 판결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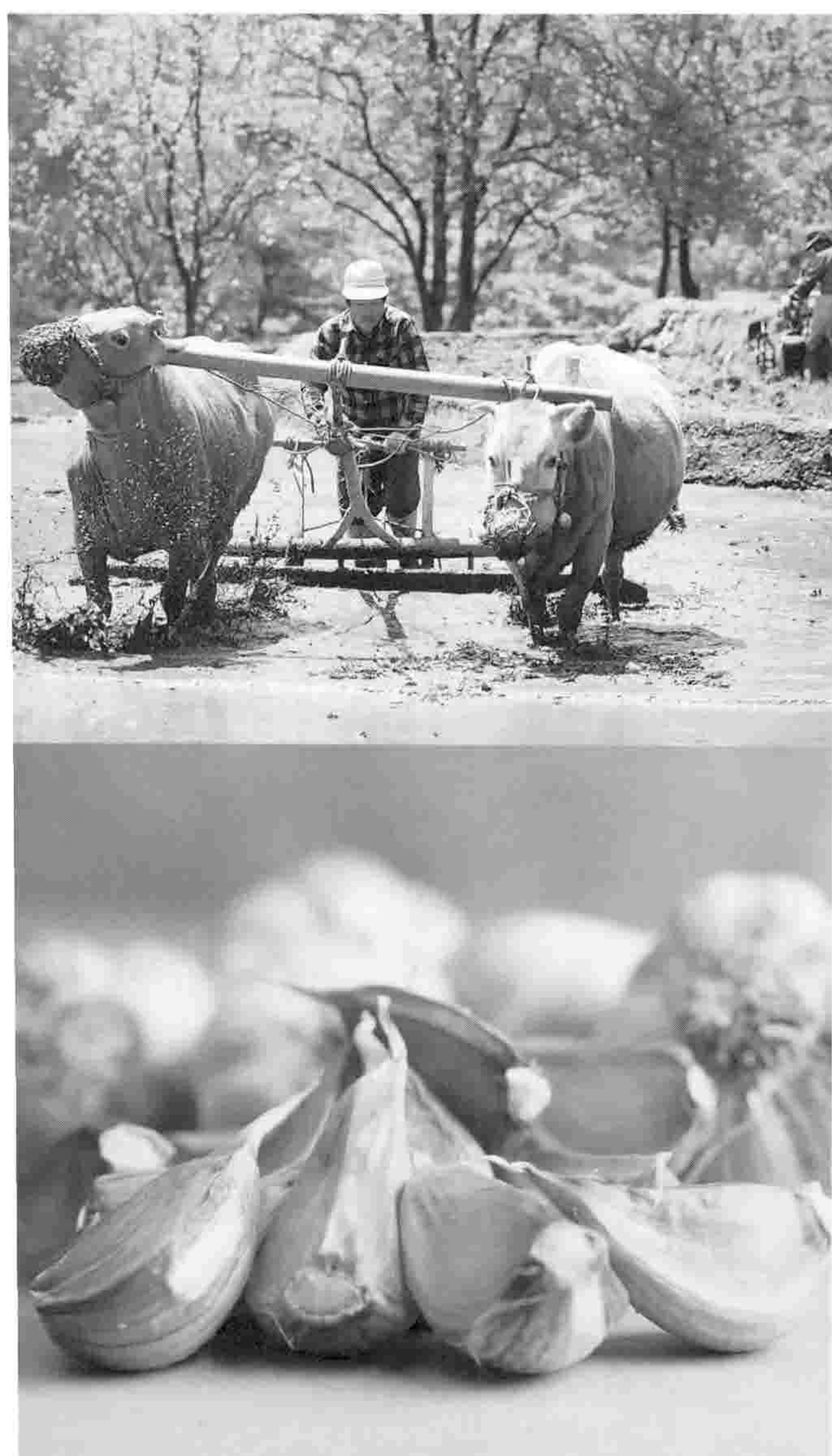
이러는 동안 상대방 여자는 2005년 12월에 찾아와 30만원을 던져주다시피 지급했고 이듬해인 2006년 9월, 김씨의 통장으로 3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물건을 구입해 간 후 1년 만에 그것도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다.

김씨는 2006년 10월 미납금 129만원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신청이 접수되면서 사건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법무관을 파견해 김씨의 진술과 주변 상인들의 증언, 청국장 제조공장의 영업허가상황 등을 꼼꼼히 파악했다.

김씨가 잡곡 판매량과 대금을 자신의 장부에만 간단히 기입해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외상거래를 입증할 만한 문서를 전혀 받아두지 않아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공익법무관 김민규는 “의뢰인(김씨)의 법률지식이 부족해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외상대금 미지금액 등 기초적인 사실 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면서도 “주변 상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청국장 제조공장 등 상대방의 영업허가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김씨 주장의 사실성을 확보



했다"고 말했다. 결국 2007년 1월 김씨는 "피고들은 원고(김씨)에게 외상대금(129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의 사건은 구두 계약에 의존하기 쉬운 농산물 외상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외상 거래를 일삼아 농가를 울리는 암채 악덕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민규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외상 거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자칫 판매대금을 날릴 뻔한 상황이었지만 다수의 간접 증거 방법을 동원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입증했다"며 "소액이더라도 외상 거래는 절대 금물이며, 불가피하게 외상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물품대금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금액이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Interview

"억울한 외상 거래... 법률구조공단 손길 큰 도움"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렸는지 가슴 한 켠이 미어졌지만 친절하고 빠른 사건 처리로 마음 고생을 크게 덜었어요. 특히 비용 한 푼 안들이고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이 참 고마웠죠."

이번 일로 인해 몸이 많이 지쳤다는 김씨는 60평생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솔직히 사건이 끝난 지금까지 어안이 병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많이 당황하고 흥분했는데도 짜증한 번 안 내고 끝까지 설명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해결해 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씨는 이어 "농촌에서는 외상 거래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 지극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거래 행위도 그냥 잊고 지나치는 일이 많다"며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상 거래시 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Q&A 농산물 판매대금의 회수 방법

Q 외상대금 받는 방법
농산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채무자(농산물 매수인)가 임의로 외상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오는 등의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절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절대 금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의한 외상대금 회수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경매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 법적조치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Q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찾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소송이 끝나 집행권원(예: 확정판결정본,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얻은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하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

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이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을 발급받아 현주소 및 전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지 등을 탐문조사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나 일반인으로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Q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로 판결문이나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되고 변제기일이 기재된 계약

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만 제출하여도 되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로 부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 2008년 1월 1일 시행)

Q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찾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A 금전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금전적 가치있는 재산은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그 밖의 재산권(지적재산권, 아파트분양권, 골프장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장래의 재산인 급료, 임대료와 같이 계속적 급부관계의 채권도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양청구권과 같은 일신적속적인 권리나 성명권·초상권과 같은 채무자의 인격권·신분권 등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봤으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재산을 찾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화해조서, 인락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도 포함)이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게 되며, 이때 채무자는 정해진 범위 내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하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채권자는 이렇게 제출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Q 재산조회 제도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누락시켜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A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도 채무자가 위 민사집행법 제68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가치 있는 재산을 누락시키면 채권자는 여전히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재산조회제도인데, 이는 재산명시절차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①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 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②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거거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③ 채무자 제출의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주요 재산조회 대상이 될 기관은 ▲토지·건물의 소유권 조회시에는 법원행정처 ▲건물의 소유권은 건설교통부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예금은 해당 금융회사가 될 것입니다. 채권자는 공공기관 등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강제집행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여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의무를 위반(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허위 재산목록 제출)한 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등재 결정을 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에도 부본을 송부하여 비치하게 되며, 대법원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누구나 이를 열람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